

인천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합666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 12 선고 2022나1299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합66649 판결

전문

원 고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공주희

변론종결 2022. 4. 1.

판결선고 2022. 5.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1. 18.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1. 18.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 A,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11,111,1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D의 대표이사이다.

나. D은 G로부터 인천 남동구 H 공장용지 2,254.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G에게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2018. 1. 18. 위 채권을 G의 아들이자 A의 형인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채권양도 사실을 G에게 통지하였다.

다. A은 2019. 5. 23. 파산선고를 받아(인천지방법원 2018하단1209) I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20. 6. 22. I이 파산관재인을 사임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G은 2019. 10. 20.경 사망하였고(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피고가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D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J에 대물변제하였고, D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D에 5억 원 이상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D이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이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의 망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망인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채권액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는 원고에게 위 채권액 중 피고의 상속지분비율 9분의 2에 해당하는 111,111,111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던 도중 채권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그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새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D을 대표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계약 체결일인 2018. 1. 18. 위 채권양도 사실과 위 채권양도계약이 D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인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2020. 6. 22.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A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되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며 2020. 12. 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A은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 된 후에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원고는 위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 4. 1. 선고 2003나12962 판결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A의 지위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취소채권자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대표관리인이 임명된 후 처분된 부동산에 가처분신청을 할 당시부터 사해행위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본 것은 취소채권자가 주식회사라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취소채권자가 자연인인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와 상반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후, 판사 이주일, 판사 이인화

별지

소외 ㉔D과 소외 G 간의 2017. 1. 1.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H(K) 2,254,40㎡ 건물임대
차계약에 기한 소외 ㉔D의 소외 G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